

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(진단기관용, '20.11.18.)

◆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 일반·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진단 실시 유예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 드림

1 적용 기준

- 대상: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
- 기간: '20. 11. 19.(금) ~ 별도 해제시까지
-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의 발령 기준

2 「사회적 거리두기」 기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

1 일반건강진단

- '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'20.12.31.까지 실시
 - 특히, 필수노동자*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
- * 보건·의료, 돌봄서비스, 택배·배달, 대면업무, 환경,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
- 다만, ①검진기관의 사정(1일 수검인원 제한 등)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* ②근로자가 유예를 원하는 경우 '21.6.30.까지 실시

* (검진기관 조치사항) 검진기관 사정으로 유예가 불가피한 경우 '20.12.31.까지 접수 및 재방문(출장)일 협의, 실시 안내

- '20년 일반건강진단을 유예하여 '21.6.30.까지 실시한 근로자는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은 '22년에 실시
 - 다만, 비사무직 노동자(검진 주기: 매년)가 '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해야 함
- 검진 당일 이상 소견(발열, 기침 등)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유예* 하고,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

* (검진기관 조치사항) 근로자·사업주에게 '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' 제공 또는 가능한 경우 개인건강진단결과표에 유예 사유를 기재한 뒤 건강관리구분을 'U'로 판정

< '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 실시기간 >

구 분		일반건강진단		
		20년	21년	22년
사무직 (2년주기)	‘20년 연내 실시를 원하는 자	~ 20.12.31까지	비대상	‘22.1.1~12.31까지
	유예를 원하는 자	~ 21.6.30.까지		
비사무직 (1년주기)	‘20년 연내 실시를 원하는 자	~ 20.12.31.까지	‘21.1.1~12.31.까지	
	유예 원하는 자	~ 21.6.30.까지		
	유예자 중 ‘21년 검진 희망자	· ‘20년:~ 21.6.30.까지 · ‘21년: ‘21.7.1 ~ ‘21.12.31.까지		

② 특수·배치전 건강진단

1. 기본원칙

-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('20.1.29~2.27.)* 및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('20.2.28~6.14.)**는 **'20.12.31.까지 실시**

* 「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('20.1.29.)」

** 「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('20.2.28.)」

- '20.6.15.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* 및 본인이 원하여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('20.9.10.~10.11.)**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(1일 수검인원 제한 등)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려운 경우 **'21.3.31.까지 실시**

* 「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('20.6.15.)」

** 「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('20.9.10. 및 '20.9.21.)」

-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특수건강진단 주기일은 실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
-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(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3)을 유예한 경우 근로자 배치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하되
 -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배치전건강진단과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한번에 실시 가능
- 검진 당일 이상 소견(발열, 기침 등)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유예* 하고,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

* (검진기관 조치사항) 근로자·사업주에게 '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' 제공 또는 가능한 경우 개인건강진단결과표에 유예 사유를 기재한 뒤 건강관리구분을 'U'로 판정

-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시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동시 실시 권장

2. 단계별 실시 방안

- 「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시 기준*」에 따라 건강진단 유예
 - 유예한 근로자의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은 거리두기 단계가 유예 기준 단계 아래로 내려간 날(유예사유 해지일)부터 **3개월* 이내** 실시
 - (유예기한) 「유예 사유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」과 「'21.3.31.」 중 먼 날 기준으로 실시,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진단기관의 사정 등으로 실시가 지연*되는 경우는 추가 3개월 연장 가능함을 안내
- * 건강진단기관에 접수일, 검진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
- 유예 대상이더라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(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)
 -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다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·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 권고

* 【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시 기준】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방역수칙*을 준수하여 건강진단 실시 * 3. 건강진단 시 준수사항 참조		「유예를 원하는 근로자」 건강진단 유예	「7개 유해인자*를 제외」하고 건강진단 유예 ★ 7개 유해인자도 근로자가 원하면 유예 *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디메틸포름아미드, 벤젠,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, 염화비닐, 아크릴로니트릴	「모든 유해인자」에 대해 건강진단 유예

3. 검사방법

❖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「폐기능검사* 및 치아부식증 검사**」는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

* 폐기능 검사: 폐활량검사,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 연속측정, 비특이기도 과민검사

**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, 염화수소, 질산, 황산, 염소가 있음

- (폐기능검사)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「폐기능검사」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, 건강진단결과를 판정

※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(mMRC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검사 활용 권장), 호흡음 청진,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

- 다만,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

[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으로 폐기능검사 대상 유해인자 27종]

1.글루타르알데히드, 2.디에틸렌트리아민, 3.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(무수말레인산),
4.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, 5.베릴륨, 6.코발트(분진 및 흡에 한정함),
7.톨루엔-2,4-다이소시아네이트, 8.톨루엔-2,6-다이소시아네이트, 9.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(무수 프탈산),
10.헥사메틸렌 다이소시아네이트, 11.황화나켈, 12.(무기)주석과 그 화합물, 13.마넛알 오일미스트(광물성 오일),
14.곡물 분진, 15.나무 분진, 16.니켈 및 그 화합물, 17.광물성 분진, 18.면 분진, 19.석면분진,
20.산화철(분진 및 흡에 한정함), 21.유리섬유 분진, 22.안티몬과 그 화합물, 23.알루미늄과 그 화합물, 24.용접
흄, 25.카드뮴과 그 화합물, 26.크롬과 그 화합물, 27.텅스텐과 그 화합물

- (치아부식증 검사)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

- 이 경우 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
- 다만,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(부식증, 교모증) 및 치주 조직검사표 작성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 예방 조치하고 실시

3 건강진단 시 준수사항

① 건강진단기관

- ① 건강진단 장소에 검사자와 수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 비치
- ② 검사자에게 마스크, 일회용 장갑 등 보호구를 충분히 제공
- ③ 가능한 경우 검사자와 수검자 사이에 투명 칸막이 설치
- ④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검사자는 건강진단 업무 배제
- ⑤ 임신부, 당뇨병 등 고위험 기저질환이 있는 검사자는 가급적 폐활량 검사 업무에서 배제

- ⑥ 출장검진은 가급적 자연환기가 가능한 곳을 검진장소로 선택
- ⑦ 사용한 일회용 방역물품은 장갑을 착용한 채로 밀봉하고,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내에서 처리

[폐기능검사 시 준수사항 (배치전, 특수건강진단)]

- 폐활량검사는 가급적 원내에서 실시
- 폐활량검사실은 환기시설 및 소독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
- 검사자에게 KF94 또는 동급의 마스크, 일회용 장갑,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을 제공
- 수검자마다 적절한 성능의 일회용 인라인 필터, 코마개를 교체

2 검사자(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 등)

- ① 건강진단 전 검사자의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 여부 확인
- ② 검진장소 출입구에서 수검자의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
- ③ 건강진단을 할 때, 수시로 문이나 창문을 열어 환기
- ④ 출장검진 차량의 흥부방사선 촬영실 등 자연환기가 어려운 공간은 이동식 송풍기, 송풍관을 이용하여 외부로 공기를 배기시키는 등 강제환기
- ⑤ 검사자는 KF80·KF94 또는 동급 이상 호흡기 보호구 및 일회용 장갑 등 보호구 착용
 -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'구강검사'와 '폐기능검사'를 실시하는 경우 KF94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, 일회용 장갑,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
- ⑥ 청진기, 이경, 청력검사 버튼 등의 수검자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은 사용 전·후에 70% 에탄올 소독솜으로 소독
- ⑦ 조용한 공간으로 청력검사 부스 이동 등을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청력 부스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청력검사 실시